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5월 12일, 남진삼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3년 5월 17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남진삼 의원)

가. 제안이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가.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로 읍·면장으로 규정(안 제5조)
- 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6조~제7조)
- 다. 안내문 게시 등(안 제8조)
- 라.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제10조)
- 마.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 및 관리주체를 정하고

안내문 게시, 관리대장 작성, 안전 점검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함.

○ 검토결과,

야외운동기구를 관장하는 상위법령이 모호한 실정이고,

우리 군의 야외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지침’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통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